

(별표 1) 대학교원 자격 기준

학력 연구교육 경력연수 직명	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	전문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
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
교 수	4	6	10	5	8	13
부 교 수	3	4	7	4	6	10
조 교 수	2	2	4	3	4	7
조 교	근무하고자 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					

비 고

1. 이 표 중 대학은 사범대학·교육대학을, 전문대학은 방송통신대학(전문대학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과정을 말한다) 및 종전의 교육대학·초급대학·전문대학·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.
2. 연구실적이라 함은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또는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해당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력을 말한다.
3.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.

(별표 2) 교육·연구 경력 연수 환산표

학 력 종 별	환 산 율
1. 국내·외 대학의 전임교원과 외국대학 부속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종사한 연수	100%
2.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으로 종사한 연수 (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한함)	100%
3.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국외 저명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으로 종사한 연수	100%
4. 국·공립 연구기관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종사한 연수	70%
5. 학력인정을 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교수	80%
6. 박사학위 소지자	4년간 100%
7. 석사학위 소지자	2년간 100%
8. 박사과정 이수기간	2년간 100%
9. 석사과정 이수기간	1년간 100%
10. 대학 정규강좌 강의 연수 (주당 6시간 이상의 경우) [15주 이상 강의만 학기단위(6개월)로 산입]	30% (50%)
11. 고등학교 교사재직연수(초, 중학교 교사)	50% (30%)
12. 국가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연수	70%
13. 조교의 경력 및 연구연수	2년간 50%
14. 6, 7, 8, 9항의 연수를 초과한 연구연수	50%
15.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연수	40%
	[박사학위 취득후 70%]
16. 판사·검사로 근무한 경력	100%
17. 공인된 체육단체 및 대학의 체육코치 경력연수	50%
18. 군 의무복무연수	2년간 100%

(별표 3) 교원경력 소요 연수표

승급기간	호	급	소요경력연수(년월)
1년 9월	1	1	32.6
		2	30.9
	2	1	29.0
		2	27.3
	3	1	25.6
		2	24.0
1년 6월	4	1	22.6
		2	21.0
	5	1	19.6
		2	18.0
	6	1	16.6
		2	15.3
1년 3월	7	1	14.0
		2	12.9
	8	1	11.6
		2	10.3
	9	1	9.0
		2	7.9
	10	1	6.6
		2	5.3
1년	11	1	4.0
		2	3.0

(별표 4) 삭제

(별표 5) 연구실적물 인정환산

1. 일반 기준

저자수	주저자	공저자
1	100% (박사학위논문 200%)	-
2	80%	70%
3	70%	50%
4	60%	30%
5인 이상	50%	20%

2. 환산보정 IF 적용시 기준

- 주저자 1명의 논문 환산 편수: $\min \{1/(\text{주저자 수}+0.5), 0.5\}$
- 공저자 1명의 논문 환산 편수: $\{1 - \text{주저자수} * \min(1/(\text{주저자수}+0.5), 0.5)\} / \text{공저자수}$